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봉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8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1.

발 의 자:전봉민·정동만·백종헌

김도읍 • 서범수 • 김희곤

안병길 · 구자근 · 황보승희

양금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앙 차원의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공 공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,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기획·조정 등을 통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 보건의료위원회 및 시·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 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"를 "제5조에 따른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중 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5조(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)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(이하 "중앙 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.
 -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.
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
- 2.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
- 3.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
- 4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
- 3.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
- ⑥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조의2(시·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)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시·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시·도위원회는 해당 시·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③ 시·도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) ①	제4조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) ①
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	
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	
위하여 <u>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</u>	제5조에 따른 중앙공공
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	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-
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	
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	
하고,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	
시책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	
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
	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5조에
	따른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
	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
	경할 수 있다.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$\underline{4} \cdot \underline{5}$ (현행 제3항 및 제4항
	과 같음)
<u>⑤</u> <u>제3항</u> 및 <u>제4항</u> 에 따른 시	<u>⑥</u> 제4항제5항
행계획의 수립・시행 및 추진	
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	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5조(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)	제5조(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)

호의 사항은 「보건의료기본 법」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.

- 1.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 립 및 변경
- 2.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
- 3.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 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 한 사항
- 4.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 는 사항

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에 중앙공공보건의료위 원회(이하 "중앙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 -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 로 한다.
 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
 - 2.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 하는 사람
 - 3.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 하는 사람
 - 4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⑤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

<신 설>

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- 2.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
- 3.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

 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

 한 사항
- 4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 하는 사항
- ⑥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의2(시·도공공보건의료위 원회)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시 ·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 - ② 시·도위원회는 해당 시· 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

 관한 사항
 - 2.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

<u>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</u> <u>사항</u>

- 3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 하여 시·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- ③ 시·도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 레로 정한다.